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신설되는 장애인체육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
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종류에 장애인체육관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이용대상 및 대상간 우선순위를 정함
(안 제5조)

다. 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제6조)

라.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6조 및 제59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4조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기 타 : 조례안 붙임

구미시장예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예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직업·심리·사회교육·체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4.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관련 행사 및 장애인의 체위(體位)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체육관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② 같은 시간대에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사용료와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체육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체육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탁 만료일은 2015년 3월 14일로 한다.

■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구분	명칭	위치
종합복지관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구미시 공원로 340(형곡동)
체육관	구미시 장애인체육관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1. 복지관 강당

(단위 : 원)

기준	사용일별	사용료	냉난방료 (사용시)	비 고
1회 (2시간)	평일	20,000	10,000	○ 시간 초과시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20%를 시간마다 가산
	토·일, 공휴일	24,000	12,000	

2. 실내 체육관

(단위 : 원)

구분	사용일별	대상별	사용료	냉난방료 (사용시)	비 고
체 육 관	평일 주간 (09시~18시)	장애인	50,000	15,000	○ 사용시간은 체육관은 1회 4시간, 식당은 1회 2시간 기준임
		비장애인	100,000	30,000	
	평일 주간외 및 토·일, 공휴일	장애인	60,000	18,000	
		비장애인	120,000	36,000	
식 당	평일 주간 (09시~18시)	장애인	15,000	5,000	○ 시간 초과시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20%를 시간마다 가산
		비장애인	30,000	10,000	
	평일 주간외 및 토·일, 공휴일	장애인	18,000	6,000	
		비장애인	36,000	12,000	

3. 체력단련실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장애인		1개월	무료	동반 보호자는 비장애인 사용료의 50%를 감면
비 장 애 인	어린이	1개월	20,000	만7세 ~ 만12세(만6세 이하는 무료)
	청소년	1개월	25,000	만13세 ~ 만18세
	성 인	1개월	30,000	만19세 이상(단, 만65세 이상은 50%를 감면)

4. 부대시설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 고
		기본료	추가사용료	
음향시설	1회/1일	20,000원	마이크 1개당 5,000원	사용한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생략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목개정 2011.8.4]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비용의 징수) ① 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

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30, 2008.10.28, 2012.8.3>

②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8.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제23조에서 이동 <2012.8.3>]

구미시장에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따른 관리(각종 공과금) 운영비(인건비) 추가 발생
- 장애인체육관 사용료 등의 조정에 따른 세입 발생(안 별표 2)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따른 각종 공과금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함.
- 추계기간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8년까지 5개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시설 대관료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 시설 이용료	53,760	55,000	56,000	57,000	58,000	279,760
	소계(a)	59,160	60,400	61,400	62,400	63,400	306,760
세출	○ 인건비	455,000	468,000	482,000	497,000	512,000	2,414,000
	○ 운영비	149,000	153,000	158,000	163,000	168,000	791,000
	○ 사업비	150,000	155,000	159,000	164,000	169,000	797,000
	소계(b)	754,000	776,000	799,000	824,000	849,000	4,002,000
□ 총 비용(a-b)		-694,840	-715,600	-737,600	-761,600	-785,600	-3,695,240

※세출 : 매년 약 3% 증액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24,000	25,000	26,000	27,000	28,000	130,000
시 비	694,000	715,000	737,000	761,000	785,000	3,692,000
민 간						
기 타						
합 계	718,000	740,000	763,000	788,000	813,000	3,822,000

5. 부대의견

- 세입(사용료) 및 세출(위탁 운영비)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음.

6.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이선화(480-518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예산

○시설 대관료

단위:천 원

시 설 명	단가	대여횟수/월	개월	합계
구미시장장애인체육관	50	4	12	2,400
사물함 대여	5	50	12	3,000
계				5,400

○시설 이용료

구 분	월평균이용료	프로그램수	개월	합계
이용 프로그램	160	28개	12	53,760

2. 세출예산

시 설 명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포함)	운영비	사업비	합계
구미시 장애인체육관	455,000 (35,000천원×13명)	149,000 (3,330원×3,727㎡×12월)	150,000	754,000

※ 식당운영비 제외